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11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6">시설명 관내 가금농장,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3">성명</td><td colspan="3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소</td><td colspan="3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구분 출입통제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이행장소 '23. 4. 이후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
설정된 방역지역</td><td colspan="2">이행기간
'23. 4. 6. ~
방역지역 해제 시</td><td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7">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 관련 종사자(백신접종팀, 상하차반, 가축진료인력, 컨설팅·인공수정 인력, 동물약품업체 관계자,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, 농장 내 시설공사를 위한 외부인력)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7">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7">방역지역 내 가금농장(사육시설 50㎡ 초과 농장) 방문 시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. 가금농장의 울타리(담장)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.
- 해당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알 운반, 동물의약품운반, 난좌운반, 가축사체운반, 진료·예방접종, 기계수리, 가금 출하·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, 가축사육시설 운영·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(담장)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.
-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, 사료운송, 분뇨·퇴비운송, 깔짚차량을 의미하며,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.
-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,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,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·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.
*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,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.
-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·종계·종오리·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,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·장비·차량(지게차 포함)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.
*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·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,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.
-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, 우편전용차량,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,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, 소방차량,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.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4월 6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 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